

골재 품질관리전문기관 공모

「골재채취법」 제2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른 품질관리 전문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공모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모대상 사업

공모 기관명	업무수행 내용	지정기간
골재 품질관리전문기관	골재채취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시행	지정일로부터 5년

* 절차·방법 등은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4조의7,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참고

2. 신청 자격

가.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표3의2(별첨1)에서 정한 시설·장비·인력 등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3. 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2년 6월 14일(화) ~ 6월 24일(금) 18:00

나. 제출서류 : 붙임2 참고(지원신청서, 수행계획서 등)

다. 제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주소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2동 341호
- 전화 : 044) 201-3546

라. 제출방법 : 제출서류 7부, USB(또는 CD) 1개를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

※ 우편 제출시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만 인정하며, 반드시 전화로 접수여부 확인 필요

4. 책임수행기관 선정방법

가. 심사방법 :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른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제안평가 또는 현장실사를 병행

※ 제안평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할 경우 일시·장소 등은 추후 개별 통보

나. 평가기준

구분	평가지표	배점
수행역량 평가 (50)	전담조직의 구성 여부 및 전문성	20
	시설·장비 구성 및 내부 운영규정의 우수성	15
	품질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노하우 및 실적	15
사업계획 평가 (50)	사업계획의 충실성	20
	사업계획의 실행가능성	15
	품질시험기관과의 협력기반 확보 및 조속한 사업시행 가능성	15
합 계		100

다. 평가 결과 위원별 순위의 합이 가장 낮은 1개 또는 2개 기관을 골재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

5. 행정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으며, 선정 기관은 관보에 고시

나. 사업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위이거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다. 선정 이후 「골재채취법」 제22조의4 제6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업무가 정지될 수 있음

라.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역할 등 자세한 사항은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9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품질관리전문기관 지정 기준(「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표3의2)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제14조의7제8항 관련)

1. 공통 자격

- 가. KS Q ISO/IEC 17025에 따라 시험업무 처리요령 및 인력·장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갖추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 나. 골재 품질관리 업무를 사업 목적으로 포함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시설 및 장비 기준

- 가. 시설 기준
 - 총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골재 관련 전용 시험실 및 사무실 등으로 구분·구획되어 있어야 하며 시약 시험을 위한 자동환기시설 및 시약 보관시설이 구획되어 있을 것
 - 각각의 골재시험 종류에 따라 구획되어 있을 것
- 나. 장비 기준: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추는 것

구분	시험 기구 및 장비	수량
절대건조밀도	저울, 플라스크, 원뿔형 몰드, 다짐봉, 건조기, 철망바구니 등 KS F 2504(모래) 및 KS F 2503(자갈)에 따라 밀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험 기구 및 장비	1식(set) 이상
흡수율	저울, 플라스크, 원뿔형 몰드, 다짐봉, 건조기 등 KS F 2504(모래) 및 KS F 2503(자갈)에 따라 흡수율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기구 및 장비	1식(set) 이상
안정성	표준체, 철망바구니, 용액 침지 용기, 건조기 등 KS F 2507에 따라 용액반응에 의한 골재 손실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 기구 및 장비	1식(set) 이상
점토덩어리	저울, 표준체 등 KS F 2512에 따라 점토덩어리를 분리하고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기구 및 장비	1식(set) 이상
0.08mm체 통과율	저울, 표준체, 골재 침지 용기 등 KS F 2511에 따라 0.08mm체를 통과하는 잔입자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 기구 및 장비	1식(set) 이상
입자모양 판정실적률	KS F 2507에 따라 골재의 질량 및 건조밀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험 기구 및 장비	1식(set) 이상

마모율	표준체, 로스앤젤레스 마모시험기 등 KS F 2508에 따라 골재의 마모율과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기구 및 장비	1식(set) 이상
염화물 함유량	비커, 피펫, 데시케이터, 플라스크 등 KS F 2515 또는 KS F 4009에 따라 골재의 염화물 함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기구 및 장비	1식(set) 이상
체가름 (조립률)	표준체 등 KS F 2502에 따라 조립률 및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기구 및 장비	1식(set) 이상
편장석률	표준체, 편장석 판별용 측정자 등 KS F 2575에 따라 편장석률 및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기구 및 장비	1식(set) 이상
과쇄면 비율	표준체 등 KS F 2357 부속서 A에 따라 과쇄면 비율 및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기구 및 장비	1식(set) 이상
모래당량	모래당량 시험장치, 진동 교반기시험기 또는 수동진동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시험장치 등 KS F 2340에 따라 모래당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기구 및 장비	1식(set) 이상
잔골재공극률	소형 실린더, 깔때기, 스페큘라 등 KS F 2384에 따라 잔골재공극률 및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기구 및 장비	1식(set) 이상

3. 기술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추는 것

기술인력	해당 분야	
	전공 분야	자격 분야
가.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토목, 토목시공, 토목재료, 건축, 건축시공, 건축재료 지질, 자원 관련분야	토목품질시험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나. 기사 1명 이상		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건설
다. 산업기사 1명 또는 기능사 1명 이상		재료시험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라.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토목공학, 건축공학, 재료공학, 자원공학, 토양환경, 지질학, 이공계열 관련 학과	
마. 골재 분야 KS인증 심사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건설(F) 분야 KS인증 심사원	

비교

1. 시설 및 장비

- 가.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시험기기 및 측정장비는 중복 사용할 수 있다.
- 나. 시험에 사용되는 장비는 측정 소급성 및 교정관리 절차에 따라 필요 시 교정검사를 해야 한다.

2. 기술인력

- 가. 기술인력은 해당 기관의 골재 품질 관련 업무만을 전담해야 하며, 다른 골재품질 관련기관 등의 업무를 중복하여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 나. 기술사는 해당 자격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다. 기사는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콘크리트 및 골재 품질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라.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한 후 콘크리트 및 골재 품질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마.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골재 품질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바. 기술인력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붙임2

제출서류 및 양식

1. 제출서류

- 신청공문(제안기관 직인 날인)
- 참여의사확인서(양식 1) 1부
- 골재 품질관리전문기관 지원신청서(양식 2) 1부
- 골재 품질검사업무 수행계획서 7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표3의2 요건 충족 증빙자료 1식

2. 골재 품질검사 업무 수행계획서 작성요령

- 신청기관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하게 기술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 업무 수행계획서 목차(예시)

- 가. 기관 개요
- 나. 사업목표 및 계획
- 다. 조직구성 및 운영계획
- 라. 세부 운영계획 및 향후 운영확대 방안
- 마. 시설·장비, 재정부담 능력 등
- 바. 유사 실적 등

3. 기타 사항

- 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외한 제출서류는 가급적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 작성

<양식 1>

참여의사확인서	
명 칭	골재 품질관리전문기관 지정 신청
신청기관명	
총괄책임자	
<p>「골재채취법」 제22조의4에 따른 골재 품질검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본 기관이 심의를 거쳐 골재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선정될 시 관련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골재 품질검사업무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2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기관명) (대표자)_____ (인)</p> <p>국토교통부장관 귀하</p>	

<양식 2>

■ 골재 품질관리전문기관 지원신청서			
신청 기관		설립연월일	
대표자	(한글) (한자)	전화번호	
기관 주소			
수행계획서 내용 요약			
담당 부서		담당자 (e-mail)	()
연락처	TEL (핸드폰)	()	FAX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기관(대표자)	_____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업무 수행계획서 7부. 끝.			